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A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2회 변경)

2003. 12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주식회사 대한항공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및 사업의 범위)	1
제 2 조 (정 의)	2
제 3 조 (협약의 구성)	5

제 2 장 기본약정

제 4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6
제 5 조 (무상사용기간)	6
제 6 조 (본 시설물의 귀속)	7
제 7 조 (위험부담)	7
제 8 조 (사업시행자 및 정부의 의무와 권한)	7

제 3 장 실시절차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제 9 조 (총사업비)	8
제 10 조 (총사업비의 변경)	8
제 11 조 (실시계획의 승인)	9
제 12 조 (행정절차 추진)	10
제 13 조 (공사기한)	10
제 14 조 (시설설치 완료기한)	10
제 15 조 (권한의 위탁)	11
제 16 조 (보험가입)	11
제 17 조 (민원처리)	11
제 18 조 (안전관리)	12

제 19 조 (준공확인)	12
제 20 조 (임대 및 운영사항)	13
제 21 조 (유지관리)	15
제 22 조 (운영비)	16

제 4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 23 조 (실질사업수익률)	16
제 24 조 (사용료)	17
제 25 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17
제 26 조 (최초사용료)	18

제 5 장 불가항력의 사유

제 27 조 (불가항력 사유)	18
제 28 조 (책임부담)	19
제 29 조 (불가항력 발생통지)	19
제 30 조 (불가항력의 대책협의)	19

제 6 장 협약의 종료

제 31 조 (협약종료)	20
---------------------	----

제 7 장 분쟁의 해결

제 32 조 (분쟁의 해결)	23
-----------------------	----

제 8 장 비밀 유지

제 33 조 (비밀유지)	23
---------------------	----

제 9 장 기 타

제 34 조 (자금의 차입 등과 정부의 협조)	24
제 35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24
제 36 조 (공사에 관한 협약)	24
제 37 조 (준거법)	25
제 38 조 (언어)	25
제 39 조 (본 협약의 승계)	25
제 40 조 (서면통지)	25
제 41 조 (본 협약의 효력)	26
부록 1 수익률과 사용료의 산정 공식	27
부록 1-1 증축사업의 내용	28
부록 2 총사업비	29
부록 2-1 증축부분 총사업비	30
부록 2-2 증축시설을 포함한 본사업의 총사업비	31
부록 3 운영비	32
부록 3-1 증축전 시설의 2003년 가격기준 운영비	33
부록 3-2 증축부분 운영비	34
부록 3-3 증축시설을 포함한 본사업의 운영비	35
부록 4 예상운영수입	36
부록 4-1 증축시설을 포함한 본사업의 예상운영수입	37
부록 5 미래현금흐름	39
부록 5-1 증축시설을 포함한 본사업의 미래현금흐름	40

별첨 : 공사에 관한 협약

제 1 조 (건설사업이행보증)	41
제 2 조 (지체상금의 납부)	41
제 3 조 (공사의 도급)	41
제 4 조 (공사의 착수)	42
제 5 조 (공사감독)	42
제 6 조 (책임감리)	42
제 7 조 (공정보고)	43
제 8 조 (기성검사)	43
제 9 조 (설계 및 일반사항)	43
제 10 조 (토목시설)	45
제 11 조 (건축시설)	46
제 12 조 (기계설비 시설)	47
제 13 조 (전기설비 시설)	49
제 14 조 (통신설비 시설)	51
제 15 조 (소방시설)	51
제 16 조 (도면작성 및 제출)	52



실시협약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와 주식회사 대한항공간에 1997년 2월 21일 체결한 실시협약(이하 구협약이라 칭한다.)을 1998년 12월 31일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999년 3월 31일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및 1999년 7월 9일 고시된 '99.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01년 3월 9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화물터미널 시설의 증축내용(별첨 부록1-1)을 반영하여 협약당사자간 협약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 12월 2일 다음과 같이 개정 협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사업의 범위)

본 협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및 수도권신공항 화물터미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A(이하 화물터미널A라 칭한다) 민자유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와 (주) 대한항공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전문회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로서 본 협약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5964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사기간 : 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구 협약에 따라 본 시설물의 최초 공사를 시작한 공사착수일로부터 본 시설물의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4. 공사착수일 : 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구협약에 따라 실제 본 시설물에 대한 공사에 착수한 1998년 7월 21일을 의미한다.
5. 공항개항기준일 :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예정일인 2001년 1월 1일로서 실제 공항개항일까지 공항개항 지연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을 의미한다.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7. 관리운영권 :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화물터미널A시설관리운영권을 의미한다.
8. 대주단 : 자금차입계약상의 채권자단을 의미한다.
9. 사용료수입 : 본 사업시행자가 화물터미널 A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의 총수입을 의미한다.
10. 민자유치촉진법 : 대한민국 법률 제4773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1.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 제6021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2. 민간투자법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6220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3. 본 시설물 : 화물터미널 및 운송대리점 시설을 말한다.
14. 본 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고시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A 사업을 의미한다.
15. 본 사업기간 : 본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6. 본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인 (주)대한항공을 본 사업에 관한 본 사업시행자로 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17. 본 협약 : 정부와 본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8. 본 협약 당사자 : 정부와 본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19. 사업계획 :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1996. 4.10.일자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제출한 화물터미널A 사업계획과 2003. 4. 25.일자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제출한 화물터미널 시설의 증축사업계획을 의미한다.
20. 사업수익율 : 본 사업에 대해 본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협약당사자간에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기본계획상의 사용료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등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21. 사업시행자 지정 :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2. 소비자물가변동률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기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더 이상 공시되지 않을 경우 협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2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대한민국법률 제6095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하 수촉법 이라 칭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4. 시공자 : 본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5. 시설사업기본계획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39호(1996. 1. 6)에 의한 수도권신공항 화물터미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6. 실시계획 : 본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실시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7. 완공일 : 본 사업시행자가 최종실시설계에 부합하도록 본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완공하여 본 사업시설의 최종준공 확인을 신청하기 전날을 의미한다.
28. 운영기간 : 본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라 본 시설 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게 되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9. 운영개시일 : 운영개시일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사용료 산정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30. 인천국제공항 : 정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도 일원에 건설중인 신공항을 의미한다.
31. 인천국제공항공사 : 대한민국 법률 제5689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 존속하는 법인으로서, 구 협약상 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 및 권한·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본사업과 관련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을 의미한다.
32. 자금차입 :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3. 자금차입계약 : 본 사업시행과 관련한 본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과의 자금차입을 위한 계약을 의미한다.
34. 정부 : 본 협약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35. 제반공급시설 : 본 시설물과 관련되어 설치될 공동구, 전기, 통신, 가스, 송수,

열공급 등 제반공급(유틸리티)시설을 말한다.

36. 제세공과금 : 본 사업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의미한다.
37. 총사업비 :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38. 총선순위채무 : 본 협약의 중도해지시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물의 건설을 위한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채무원리금(조기상환수수료 포함 등)을 의미한다.
39. 화물수요 :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착 및 출발되는 화물의 총수요를 의미한다.
40. 화물터미널 A : 국적항공사용 화물을 항공기로부터 하역 또는 항공기로 적재하기 위해 보관 또는 화물 분류작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41. 화물터미널 B : 국적항공사용 화물을 항공기로부터 하역 또는 항공기로 적재하기 위해 보관 또는 화물 분류작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42. 화물터미널 C : 외국항공사용 화물을 항공기로부터 하역 또는 항공기로 적재하기 위해 보관 또는 화물 분류작업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43. 화물터미널 사용료 : 본 사업시행자가 화물터미널A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민간투자법상의 사용료로서 화물터미널A 시설물의 임대료를 의미한다.

제3조 (협약의 구성)

화물터미널A 민자유치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서는 본 실시협약서 및 본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부속서류 포함)와 기본설계도면으로 구성된다.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정부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주) 대한항공을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지정, 승인, 설정 및 부여한다.

- ①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의 시설물 설계와 건설
- ② 제1항의 건설을 위한 부지의 무상사용
- ③ 제1항에 따라 건설된 본 시설물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무상사용
- ④ 관리운영권에 의한 제3항의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 운영과 사용료의 징수

제5조 (무상사용기간)

- ① 본 협약 제4조제3항의 무상사용기간은 본 협약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지 아니하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동안 제4조제4항의 관리운영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② 화물터미널 시설의 증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은 관리운영권 등록부(표시번호 2)상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118일을 연장하여 2022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단, 증축공사의 착공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연되어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제6조 (본 시설물의 귀속)

본 시설물의 소유권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며, 운영기간 종료후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정부에 이양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부담)

본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사업시행자 및 정부의 의무와 권한)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협약 및 관련법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는 사업기간동안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 ③ 정부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국적항공사용 화물은 화물터미널 A, B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화물수요가 시설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정부는 외국항공사용 화물수요가 화물터미널C의 시설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한하여 사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협의하게 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화물터미널A에서도 외국항공사용 화물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국적항공사용 화물수요의 증가로 확장 및 추가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무상사용기간중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부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
- ⑥ 본 사업시행자는 지분을 10%이상의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실시절차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총사업비)

- ①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따라 추후 변경되지 않는 한 1995년 12월 31일 불변가 기준 55,962백만원으로 한다. 그 내역은 별첨 부록 2와 같다.
- ② 총사업비중 공사비는 48,819백만원으로 하되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제출할 공사비 산출근거에는 공종별 수량 및 단가가 명기된 공사비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화물터미널 시설의 증축내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총사업비는 2003년 5월 31일 불변가 기준 80,53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그 내역은 별첨부록 2-2와 같다.
- ④ 제3항의 총사업비 중 공사비는 2003년 5월 31일 불변가 기준 70,399백만원으로 한다. 그 내역은 별첨 부록 2-2와 같다.

제 10조 (총사업비의 변경)

- ① 화물터미널 A 건물외벽 중심선 3 m부터 주관로까지의 상·하수도 시설, 오수관로시설, 전기시설, 도시가스시설, 열공급시설 등 제반공급시설(유틸리티)

공사를 본 사업시행자 또는 본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여 본 지역에서 함께 사용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자와 배분하여 본 사업시행자가 분담기로 협의 결정할 경우에는 그 분담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② 본 협약체결이후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거쳐 사전에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본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2. 정부가 설계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청하고 이로 인한 공사량의 증감을 인정하는 경우. (단,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사업계획서상 설계자로 인하여 발생한 지적사항은 제외)
3. 법규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총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위 제3항에 의한 설계변경시 공사량의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항에 따른다.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설규모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규모(73,651m²)로 하되 시설규모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수요 변동에 대한 위험부담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 ③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 이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경유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3에 의거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본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조 (행정절차 추진)

민간투자법 제16조에 의한 행정절차 이외에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3조 (공사기한)

- ① 본 사업의 공사기한은 2000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증축사업의 공사기한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사유, 정부의 귀책사유등 기타 본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증축사업의 공사기한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공사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조 (시설설치 완료기한)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와 협의하여 운영개시일 2개월 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장비의 설치등 시설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조(권한의 위탁)

① 정부는 본 사업의 건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1. 감리전문회사의 지정
2. 본 협약 제10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3. 본 사업시행에 관한 준공검사
4. 공사 중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의 지시
5. 공사시행에 관한 모든 지도·감독사항
6. 기타 본 협약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위탁된 사항

② 위 제1항에 정한 사항에 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이를 보장한다.

제 16조 (보험가입)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7조 (민원처리)

본 시설물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등 본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사항은 본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제 18조 (안전관리)

- ① 본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중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대로 안전관리를 하되 추후 보완할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지시에 따르며, 감리전문회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 ②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운영기간중 필요 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9조 (준공확인)

- ① 본 사업시행자는 완공일 45일전까지 확정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받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경유하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완공 1개월전까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부터 예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본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완공후 감리전문회사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한 공사준공검사 신청서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준공검사 결과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준공검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시는 준공확인필증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행자가 화물터미널A에 대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운영개시일, 최초사용료 기타 필요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⑤ 본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은 후 6개월이내에 본 시설물의 건설과 관련한 공사시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본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임대 및 운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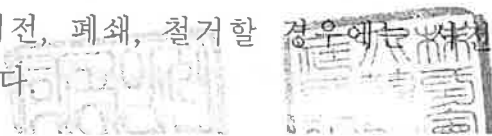
- ① 본 사업시행자는 화물터미널A시설 본래의 용도외에 타 용도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 ② 화물터미널A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화물터미널A 시설은 국적항공사용 시설로 계획된 만큼 화물터미널A에서는 국적항공사용 화물을 처리하며, 임대를 희망하는 관련기관 및 업체 모두에게 공평한 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하고 임대조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본 사업시행자는 업체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임대업체 선정기준을 작성하여 실시계획 제출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즉시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 임하기전에 임대희망 국내·외 업체를 파악(문서확인)하여 임대조건, 임대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가능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포함한 임대계획을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장비설치 주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고 가급적 사용자의 의견을 수용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행자가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사용기간 만료후 설치된 장비의 처리는 설치자가 자비로 철거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임 사용자와 계속 사용에 대해 협의 될 경우에는 협의 결과에 따른다.
 5.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 선정과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보험가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사업시행자는 화물터미널내에 정부기관의 입주시 해당 정부기관 및 인

천국제공항공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하며, 정부기관도 일반업체와 동일한 임대기준을 적용한다.

7. 본 사업시행자는 임대 등 사업계획서 제출내용 이외에 화물터미널A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국제제공항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8. 화물터미널A 시설에 대한 본 사업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시설사용자가 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시설사용기간 및 당해 영업권은 동시에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에게 자신의 무상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시설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화물터미널A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시설사용자가 영업수행상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영업승인의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은 이를 근거로 본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사용자에 대한 시설사용승인의 취소나 철회를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본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시행자는 동 시설의 관리운영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적 의무시설(급수, 위생(흡연실), 소화, 전기 및 기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 시설이용자의 복지 및 편의를 위한 적정규모의 식당과 휴게실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은 화물터미널A시설 운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화물터미널A시설 운영실태를 파악 조사케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본 사업시행자나 시설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시행자나 시설사용자는 당해 기본시설물 외에 필요한 추가시설을 설치, 이전, 폐쇄, 철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국제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사업시행자는 사용자가 ICAO규정, 항공법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익자부담 경비원칙에 의하여 경비감독기관이 정하는 소요의 청원경찰을 직접 임용하여 근무배치 및 감독 등의 경비업무를 담당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유지관리)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동안 본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3개월 전까지 유지지침서가 첨부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말 다음 년도 유지보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를 위한 자기진단 계측 SYSTEM구축
 2. 1,2종 시설물(특수구조)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
 3. 일반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계획
- ③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준공도,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와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관리대장(건축분야)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본 사업시행자는 1종,2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후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은 수시로 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으며, 본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본 사업시행자는 각종 설계도서(원본)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도면관리예규를 준용하여 관리 후 인계하고 무상사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비)

- ① 토지사용료 및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는 1995년 12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32,659백만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별첨 부록 3와 같으며, 운영기간중의 보험료는 본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본 사업을 위한 토지는 본 사업시행자에게 운영 개시 전까지 무상으로 사용토록하고 운영개시후 부지사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항시설관리규칙에 의한 토지사용료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납부하며, 납부방식 및 절차에 대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화물터미널 시설의 증축내용을 반영하여 제1항의 운영비는 2003년 5월 31일 불변가 기준 47,951백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그 내역은 별첨 부록 3-3과 같다.
- ③ 운영기간 중 법인세 등 관련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는 무상사용기간 또는 사용료 조정을 통해 반영한다.

제 4 장 사업수익율 및 사용료

제23조 (실질사업수익율)

- ① 본 협약에 의한 사용료 등의 산정을 위해 적용할 수익률은 세후 실질수익율(IRR)7.24%로 하고 무상사용기간 중 변경하지 아니한다.

- ② 통합되는 화물터미널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4조 (사용료)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동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 방법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관련 제규정을 준용하되 시설사용자와 별도 협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② 화물터미널A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연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년도에 대한 사용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화물터미널A의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

- ①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에 관련 사항은 별첨 부록 1의 함수관계식에서 산정한다.
- ② 제10조(제10조제3항제3호 제외)에 따르는 조정과 공사시행중 또는 완공후에 천재지변, 정부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산을 할 경우에는 무상사용 기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공항개항기준일로부터 공항개항일까지의 공항개항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과 본사업 시행자간 협의에 의해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제10조제3항제3호로 인한 변경은 사용료에서 조정한다.
- ⑤ 무상사용기간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은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년이 초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사용료로 조정할 수 있다.

단, 국가의 정책변경,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정부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최초사용료)

최초의 사용료는 별첨 부록 1의 산식에 의하여 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15일 전까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 23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최초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사용료는 1995년 12월 31일 불변가 기준으로 별첨 부록 4와 같다. 단, 사업수입의 합계가 동일한 범위내에서 시설용도별로 차등을 둘수 있으나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1. 화물터미널 시설의 증축내용을 반영하여 본 사업시설의 사용료는 2003년 5월31일 기준으로 별첨 부록 4-1과 같이 변경한다.
2. 최초사용료 산정을 위한 변동률은 별첨 부록 4의 사용료에 운영개시일 1개월전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별첨부록1의 사용료 산정 산식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총사업비의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제 5 장 불가항력의 사유

제27조 (불가항력 사유)

협약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의미하며, 불가항력 사유는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구분한다.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정된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산업전반의 파업
3. 정부정책, 경제환경 및 본 사업환경의 전반적인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 계약(들)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정된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제28조 (책임부담)

본 사업시행자가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하여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기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9조(불가항력 발생통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동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불가항력의 대책협의)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은 제29조에 의한 통지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개시하여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치유책 및 이에 대응한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제 6 장 협약의 종료

제31조(협약의 종료)

① 다음의 경우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구협약의 별첨 공사에관한협약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정부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2. 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3. 본 사업시행자의 주주총회에서 사업시행자의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한 경우
4. 민간투자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의한 경우. 단, 이 경우 정부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한 본 협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동기간의 만료로 본 협약은 종료된다. 단, 본 협약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본 협약 제30조에 따른 협의 개시후 60일 이내에 본 협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협약 제27조에 정한 사유의 발생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료와 무상사용기간의 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본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한 후 6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금차입계약이 사전 종료하고 종료후 60일 이내에 이를 대치할 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③ 본 협약이 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 정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관리운영권에 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당권자, 이하 동일)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 적정가치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별첨부록5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④ 본 협약이 민간투자법 제47조 또는 위 제2항1호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별첨부록5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⑤ 위 제2항 3호 또는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별첨부록5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⑥ 위 제2항 2호 또는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별첨부록5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 ⑦ 본조에 정한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는, 중도해지시점까지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사업비를 해지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투입시점부터 중도해지시까지 실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동 환산액에 사업수익율을 해당기간만큼 적용하여 산출한 연도별 총사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 ⑧ 본 협약이 위 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 위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금원의 지급시점까지 본 사업시행자가 대주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는 정부가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인수하거나 대주의 합의가 있을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동일조건으로 이를 인수하게 하기로 한다. (여기서 조건이라 함은 대주와 사업시행자간의 대출약정서상의 제반 대출조건을 말한다.) 본 제8항에 따라 정부가 본 사업시행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위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정부가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동 채무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 ⑨ 위 제3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 각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본 협약 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해지시지급금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해지시지급금의 산정결과를 본 협약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 협약 당사자 쌍방은 전문기관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인정하기로 하며, 정부는 전문기관의 위 서면통보 후 해당 금액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⑩ 본 협약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전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 제5조에 규정한 무상사용기간 및 운영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한다. 또한, 본 협약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전종료되는 경우에는 위 무상사용기간 및 운영기간도 함께 종료된다.

⑪ 본 협약이 운영기간의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만료일 6개월전에 본 시설물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운영기간 만료일에 화물터미널A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인계한다.
2. 위 시설점검 결과 화물터미널 A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만료전까지 본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분쟁의 해결

제32조 (분쟁의 해결)

- ① 본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 ② 제1항과 같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상사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 중재지는 대한상사중재원 소재지로 한다.

제 8 장 비밀 유지

제33조 (비밀유지)

- ① 본 협약 당사자 쌍방은 본 협약의 종료 여부에 불구하고 타방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본 협약의 내용이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타방 당사

자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4. 정보 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 9 장 기 타

제34조 (자금의 차입등과 정부의 협조)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은 본 사업 수행에 있어 본 사업시행자가 대주단과의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본 협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등 주요사항에 대한 대주단의 요청에 협조하기로 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등)으로 하여금 대주단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35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본 협약 내용 중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 내용에 따라 동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6조 (공사에 관한 협약)

공사에 관한 협약사항은 구협약 별첨 "공사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8항까지와 같다.

제37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38조 (언어)

본 협약은 한글본을 정본으로 한다.

제39조 (본 협약의 승계)

본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본 협약상의 본 사업시행자의 모든 지위 및 권리와 의무는 동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본 사업시행자는 그 승계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이를 승계한다.

제40조 (서면통지)

- ① 각 협약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상대방의 수취 확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다.
- ② 각 협약당사자에 대한 문서의 통지나 송달은 아래의 주소로 이루어진다.

1. 정부에 대한 통지 :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항공안전본부

참조: 신공항개발과

전화: 02 - 2669 - 6447

팩스: 02 - 2662 - 6749

2. 본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 주식회사 대한항공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참조: 건립사무국

전화: 032 - 742 - 5001

팩스: 032 - 742 - 6161

제41조 (본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 당사자는 첫머리에 기재한 날짜에 본 협약서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3. 12. 2.

대 한 민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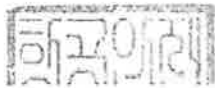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 함 대 영 (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0번지

대표이사 심 이 택 (인)



부록 1. 수익률과 사용료의 산정 공식

사용료 산정은 아래의 함수관계식을 기준으로 한다.

$$\sum_{t=1}^n \frac{CC_t}{(1+r)^t} = \sum_{t=n}^N \frac{(OR_t - OC_t)}{(1+r)^t}$$

여기서,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기간의 종료시점

CC_t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다만,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OR_t : 매년도 운영수입

OC_t : 매년도 운영비용

r : 본 사업의 실질수익률(IRR)

부록1-1. 증축사업의 내용

(단위:m²)

	변 경 전(1차공사)				증가면적	변 경 후
	화물터미널	운송대리점	훈증실	계		
건물면적	49,714.73	1,956.68	237.06	51,908.47	8,100	60,008.47
연 면 적	57,863.60	7,810.23	237.06	65,910.89	7,740	73,650.89
지하 1층	2,208.61			2,208.61		2,208.61
지상 1층	47,689.37	1,940.61	237.06	49,867.04	7,740	57,607.04
지상 2층	6,273.58	1,956.54		8,230.12		8,230.12
지상 3층	1,692.04	1,956.54		3,648.58		3,648.58
지상 4층		1,956.54		1,956.54		1,956.54
옥 탑	154.50	121.00		275.50		275.50
계	57,863.60	7,810.23	237.06	65,910.89	7,740	73,650.89



별첨

공사에관한협약

제 1 조 (건설사업이행보증)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따른 건설사업이행보증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조 (지체상금의 납부)

- ① 본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의 완공기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그 실제 완공일까지 미완공분의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1일당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 제13조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이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은 연장된 완공기한 이후부터 부과한다.

제 3 조 (공사의 도급)

- ① 본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건설업법 제22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감리전문회사는 위 하도급을 받은 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건설업법 제23조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본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그 하도급자의 시공과정에서 노임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의 기성부분중 체불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제 4 조 (공사의 착수)

- ① 본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공계를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거쳐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초 공사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본 사업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는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조 (공사감독)

본 사업의 공사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의 감독을 받아 시행한다.

제 6 조 (책임감리)

- ① 공항공사 사장은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지정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본 화물터미널“A”의 공사에 대하여 동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수행을 감독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공항공사 사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매 분기의 감리비를 그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첫째 날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항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공항공사는 공사감리실적에 따라 감리비를 감리전문회사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본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제 7 조 (공정보고)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화물터미널의 공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 공사추진현황을 공항공사사장을 경유하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사일정에 따라 본 사업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성검사)

본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실적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전문회사는 기성검사 완료후 지체없이 본 사업시행자와 공항공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설계 및 일반사항)

- ① 화물터미널 "A" 시설의 건설위치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위치로 하며, 본 사업시행자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시행에 있어 인천국제공항 기본계획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이라 한다)에서 시행중인 세부평면배치계획 내용에 부합토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시한 설계내용 및 정부와 협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 및 건설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단계별 주요내용 및 공정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의 '공정관리절차서'에 따라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전체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시행자는 설계시 관련 전문가로 “설계자문단”을 구성하여 최소 3회 이상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자문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실시설계도서는 본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하되 본 협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신청 이전에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설계, 공사, 감리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항공사 사장의 감독을 받아 시행한다.
- ⑥ 본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이 공항내 타 시설과 동일한 품질확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관리절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⑦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 제작, 설치, 시공 등 모든 업무범위에서 국제품질 규격인 ISO 9001 또는 KSA 9001 품질시스템 요건에 따라 품질보증체계를 수립한 후 이에 따라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⑧ 공항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건설을 위한 자재수급과 공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공항공사에 요청할 경우에는 가급적 지원하여야 한다.
- ⑨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건설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동 내용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⑩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시에는 관련법규 및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며, 계획수립 및 설계시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⑪ 인천국제공항 운영시에는 TMS(환경감시시스템)이 설치되므로 환경오염방지 시설에서 정화처리되는 배출가스, 수질 및 소음에 대한 측정·감시가 가능한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AICC 및 TMS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⑫ 환경오염방지시설(오염물질을 공동처리장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포함)의 측정장비에서 생산되는 DATA를 TMS로 전송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TMS의 전송회선사용 불가시 DATA 전송을 위한 유선 또는 무선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⑬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전 공항공사의 관리기준 공정계획에 따라 전체시설물과의 종합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⑭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시 보안 및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인 공항시설에 대한 설계이므로 조사내용,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⑮ 협약에 따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항공사에서 수행한 부대건물 관련설계의 내용을 참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 10 조 (토목시설)

- ① 건물의 위치가 확정되면 공사의 Landside 설계팀에게 건물좌표를 제시하여 도로 및 주차장 등 공공시설 설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시설물과 공사에서 시행하는 주변 포장공사와의 업무분담에 대하여 상호협의를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반 오수는 공항공사에서 별도 계획 추진중인 주간선 오수관로상의 맨홀에 연결 배출시켜야 하므로 본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양, 수질의 특성, 배출관로의 관경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에 제출하여 주간선 오수관로의 계획수립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규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전량 완전처리하여 주변 배수로에 연결 방류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화물터미널 주기계획 : 공항공사에서 수행중인 AIRSIDE 토목시설 실시설계에서는 화물터미널 건물형태 및 주기계획을 당초 기본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1 Moudule당 4대의 E급 항공기를 주기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공사발주중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공항공사에서 계획한 화물터미널 항공기 주기계획을 기준하여 화물터미널 건축설계를 하여야 한다.

⑤ 화물터미널 배수계획 : 사업시행자는 공항공사에서 수행중인 AIRSIDE 토목시설 실시설계에서 계획된 간선 및 지선 배수계획을 기준하여 건물의 우수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에서 확정된 건물주변 집수정 위치까지 배수관로를 연결하여야 한다.

⑥ 기초 슬래브 설치전에 이 지역에 연약지반처리 시행으로 압밀 처리를하여 장기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본 사업시행자는 본 건물의 유틸리티 수용을 위하여 지선 공동구를 설치하되 건물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잔여구간은 본 협약 제10조제1항에 의거 상호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공동구 설계시에는 2단계 이후의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1 조 (건축시설)

①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의 위치결정에 있어 건물로 인한 ILS에 전파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입면 및 색채계획은 공항전체 이미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외부시각디자인(Signage & Graphics) 설계시에는 공항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Signage & Graphics 설계지침에 근거하여 설계하고, 세부실시사항은 공항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마감자재에 대하여는 광선이나 전파의 난반사 등으로 인해 공항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건물 설계시에는 공항공사의 염해방지 관련 지방서를 준용하여 염해에 충분히 대비토록 하여야 한다.

⑥ 건물의 구조는 매립지반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완벽한 지반조사를 근거로 설계하고, 특히 발생가능한 지진에 충분히 대처하도록 본 설계에 반영할 기준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토록 한다.

⑦ 구조가 화물이동 및 취급에 적합한지 여부를 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이의 적절한 규격과 이에 연관된 여타 구조물의 크기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본 건물 설계시에는 시설물안전관리에대한특별법에 의거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계설비 시설)

① 본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58조 규정에 의해 건물의 주용도상 비상급수 및 중수탱크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는 비상급수 및 중수탱크를 자체 또는 그룹별로 설치하고 건물에서 요구되는 양수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냉난방을 위하여 공급되는 열원은 열병합 배열인 중온수 이외에는 없으므로 본 시설에서 필요로 되는 냉난방 장치는 자체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시행자는 추후 공항공사와 상호 합의하에 결정될 열공급 배관설치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건물내에는 중수를 이용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⑤ 각종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⑥ 본 사업시행자는 건물외벽 중심선 3m까지만 제반공급시설을 시행하고 공항 공사는 주 공동구 외벽 1m까지의 제반 공급시설을 시행하며 잔여구간은 본 사업시행자와 본 협약 제10조제1항에 의거 상호 협의후 시행한다.
- ⑦ 본 시설과 다른 화물터미널 건물과의 유틸리티 연결은 관련 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공항공사는 이와관련 사업시행자간의 협이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⑧ 가스배관은 사업시행자가 인천도시가스와 협의하여 주라인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며, 본 관로의 유지보수도 본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⑨ 본 사업시행자는 각종 유틸리티(중온수, 중수, 급수) 계량기를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건물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⑩ 본 사업시행자는 각종 유틸리티의 사용료를 공항공사와 협의후 납부하여야 한다.(중온수 사용료는 열병합 사업자, 공항공사, 사용자와 협의후 확정)
- ⑪ 본 사업시행자는 냉동설비를 위한 CFC계 냉매와 소화설비를 위한 HALON 가스 사용을 지양하고 오존 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은 대체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⑫ 본 사업시행자는 각종 유틸리티 배관 재질을 선정함에 있어 시공 및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공항공사에서 사용 예정인 배관자재를 준용하여 사용하고, 부득이 종류가 다른 재질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⑦ 건물 및 설비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상용전원외에 예비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화물창사 계류장조명을 위한 전원공급은 화물창사별 발전 설비의 저압배전반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⑧ 설계시에는 우선적으로 단계별 전력수요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 공항공사에 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설계 및 신공항 단계별 전력공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체 수전설비는 단계별 수요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⑨ 조명설비는 건물의 기층 및 문위를 고려한 조명방식, 광원, 조명기구를 선택하여야 하고 대규모 복합기는 건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조명 자동제어 방식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⑩ 자체 배전설비는 각각의 시설이 요구하는 공급신뢰도, 공급용량, 공급전압 등 를 만족하는 계층으로 설계하되 배전설비의 배치 등은 전력순위를 고려하여 부하의 중심점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⑪ 본 사업시행자는 화물터미널지역에 설치되는 화물창사지역 배전변전소 또는 화물창사내 변전소의 수전설비로 부터 전력선로를 인출하여 수전(상시1회선, 비상1회선)하여야 하며, 시설확장시 전력공급에 대비하여 충분한 수전설비를 고려하고, 여타 화물창사에 전력을 공급하기위해 사업시행자측 수전설비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인출용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⑫ 수전설비는 신공항 전력계통에 부합되는 수전설비를 계획하되, 안전성, 경제 성, 공급신뢰도를 고려하여 공항공사와 협의하에 설계하여야 한다.
- ⑬ 모든 전기설비는 공항기층의 중축선, 에너지절약 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하여 야 하며, 공항공사에서 시행하는 신공항의 전력시설행계와 연계성이 있는 부 분은 이를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 13 조 (전기설비 시설)

- ⑧ 공항공사가 계획하는 신공항 전력통합감시 및 제어시스템 구축과 연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화물터미널“A”의 전력감시정보가 공사시스템에 제공되어야 하며, 관련시설의 구성은 공항공사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공항공사의 각종 통제실로부터 화물터미널“A”의 건물외벽 중심선 3m까지의 LAN망 설치 는 공항공사에서 시행한다.
- ⑨ 전력공급 및 공사시행 구분에 있어서 책임분기점은 화물청사지역 배전변전소 또는 사업시행자측 수전설비 특고압 차단기(22.9KV) 2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사고의 파급방지 및 계통보호 협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전력사용량 계량을 위한 장치(MOF 및 DM)는 본 사업시행자측 수전설비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⑩ 화물청사지역내 설치될 화물청사지역 배전변전소의 설계시공은 공항전체 전력계통 구성 및 확장성을 감안하여 공항공사가 일괄 시행하고 이에따른 건설비용은 동 시설의 이용시에 공항시설 운영주체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한다.
- ⑪ 본 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시설의 배치에 있어 동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중간 배전변전소의 위치를 감안하여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전체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⑫ 공항종합정보통신센터(AICC), 공항소방대등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화물청사 운영정보, 경비보안, 화재탐지정보등은 동 시설 설계시 공항공사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공항공사의 통신망에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단, 공항공사의 각종 통제실로부터 화물터미널“A”의 건물외벽 중심선 3m까지의 LAN망 설치 는 공항공사에서 시행한다.
- ⑬ 항공기 동력용 전원설비(400Hz Power Supply System)는 장래항공기의 동력소요 및 공항의 환경오염을 감안하고 각 항공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운영계획에 따라 장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⑭ 화물터미널 건설기간중에 공사용 임시전력을 공항공사가 선투자한 배전선로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기수용용량 및 사용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시설분담금을 공항공사의 청구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 (통신설비 시설)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정보, 통신 및 자동화시스템은 공사에 의해 통합 구축 및 운영될 것이므로 본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단, 각 법인의 고유한 정보, 통신 및 자동화시스템은 통합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① 사업의 정보, 통신 및 자동화시스템 부분은 계획, 설계, 구축/시공 및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항공사의 종합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자(MSI, Master System Integrator)와 협의하고, 시스템통합에 관한 동 계약자와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가 인천국제공항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항공사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의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7년도에 작성될 공항공사의 시스템통합기준, 정보통신 기술기반구조 및 시스템통합표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시스템통합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시스템 통합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화물터미널의 자동화시스템으로부터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운영자 고유의 업무영역 및 비밀사항 등은 제외 한다.

제 15 조 (소방시설)

- ① 각 사업시행자간 상이한 소방시스템을 구성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호 협조하여 동일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소방시설은 본 사업시행자가 관계법규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인·허가 사항도 본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소방시설은 소방법 및 국내외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④ 소방시설 설계시 소방협회, 화재보험협회, 인천광역시 소방담당등 관련기관의 자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인천국제공항의 소방시설 통합감시체계와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성·시행하여야 한다.

제 16 조 (도면작성 및 제출)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은 물론 운영과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과정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시행, 관리하기 위하여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를 통일화하고, 이를 Data Base로 구축·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설계통합기준서와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설계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① 동 기준서에 없거나 신규 발생사항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CAD System(Auto CAD)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하드카피와 함께 동자료를 전자화일 형태(디스켓, 테이프 등 저장매체)로 제출하되 동자료는 공항공사의 CAD System (공항공사는 Auto CAD, 고은글 사용중임)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도면은 벡터자료로, 외부 참고자료는 라스터 또는 벡터자료로 제출하되, 벡터자료는 *.DWG, *.DXF 화일 포맷으로, 라스터 자료는 TIFF 화일 포맷으로 생성하여야 한다.



- ④ 지형도 입력사항 및 기준은 국내에서 사용중인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건설교통부령 제17호 : '95. 5. 29)에 의거 표준코드와 표준도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도형 데이터는 도면의 종류와 레이어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⑥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보고서는 보고서와 함께 동 내용을 수록한 전자화일(디스켓, 테이프 등 저장매체에 수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하되, 공항공사가 사용하는 Word Processor(공항공사는 한글 3.0, 아리랑 3.0을 사용함)와 호환되어야 한다. 제출되는 전자화일은 자료화일 목록을 포함한다.
- ⑦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Data Base화 하였을 경우에는 동 자료를 디스켓 등 기억장치에 수록하여 동 기억장치와 목록 및 테이블을 제출한다.
- ⑧ 기타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끝.